

수원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1가단2826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김재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태헌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우화산

담당변호사 김웅, 윤우정

변 론 종 결 2021. 8. 10.

판 결 선 고 2021. 9. 7.

주 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21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7.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D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2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1. 6. 접수 제26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2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0. 1. 6. 접수 제26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금융기관의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차전5311호로 양수금 7,426,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10.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

-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같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망 E가 2019. 10. 2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3/21 지분)와 자녀들인 F, G, H, I, 피고 C, J, K, D, L(각 2/21 지분)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 2) 피고들과 D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10. 27. 이 사건 1, 2 부동산을 피고 B가, 이 사건

3, 4 부동산을 피고 C가 각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2020. 1. 6.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696호로,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697호로 각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무자력

D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2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D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D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망인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가 50,000,000원, 피고 C가 60,000,000원을 각 D에게 치료비로 대여하였고, 피고 C는 망인에게 생활비로 20년간 월 3,000,000원씩 7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의 M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350,000,000원을 인수하였는바,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위 각 채권에 대한 변제나 상계 또는 위 채무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의 주장을, D가 피고들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행하여 살펴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피고들에 대하여 각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D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다른 채권 등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는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그러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21 지분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D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각 2/2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1. 6. 접수 제26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는 이 사건 3, 4 부동산 중 각 2/2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0. 1. 6. 접수 제26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선우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경기도 화성시		전	117㎡
2. 경기도 화성시		답	1332㎡
			(소유)
3. 경기도 화성시		대	578㎡
4. 경기도 화성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125㎡			
			(소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관할)			

